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4
----------	------

발의연월일 : 2013. 6. 3.

발 의 자 : 박성호 · 김태원 · 김희정
강기윤 · 최봉홍 · 박창식
김세연 · 신성범 · 유승우
박인숙 · 심학봉 의원
(11인)

제안이유

콘텐츠 산업은 인문학,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 분야임.

하지만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하며, 국내 콘텐츠 업계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 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함.

주요내용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투·융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여,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콘텐츠의 연구개발사업 및 소외 콘텐츠산업에 대한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용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

수할 수 있다.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용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용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용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제5조의 별표2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67. 「콘텐츠산업 진흥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별표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9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담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u></p> <p><u>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u> <u>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용자금</u> <u>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 <u>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u> <u>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u> <u>5.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p><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u></p> <p><u>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u></p>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 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용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용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용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고 있어, 국가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라 상상콘텐츠 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각 수입원들의 규모와 범위등을 기술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4. 작성자

박성호의원실 김영완 비서(788-2349)